

의안번호	
의 퇴 인	신동욱의원
회 답 일	2024. 9. 19.
추계번호	24C3746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1조의3(민간 관리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지원 등)	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(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를 말함)이 소유·관리하는 초상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 및 관리상황을 조사할 수 있음 국가유산청장은 조사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상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박물관 등으로의 이전 등 소유자·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적절한 보존·관리 방안을 권고할 수 있고, 소유자·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권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1조의3(민간 관리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지원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민간 관리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지원(안 제7조)

- 국가유산청은 기록유산DB구축 사업을 통하여 역사적·학술적·예술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관리 기반이 취약하여 도난·멸실 위험이 큰 기

록유산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간 기록유산 DB구축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¹⁾

- 2022년 전라, 충청, 제주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, 2023년 중요서원(11개소) 소장 기록유산, 2024년 현재 경북, 대구지역 비지정 기록유산을 조사 중에 있음
- 안 제61조의3제1항은 필요한 경우 민간이 소유·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여, 조사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조사 지역이나 조사내용, 조사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.
 - － 다만, 기록유산 DB구축사업을 통해 3개년간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
- 안 제6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상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소유자·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적절한 보존·관리 방안을 권고하고 그 권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예상할 수 있겠으나, 관련 소요는 조사 결과 이후 권고기준과 지원 수준이 결정된 이후 추산이 가능한 것으로서 현시점에서는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1) 사업비는 총 15억원(연간 5억원)으로, 해당 사업에서 기록유산의 범위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국가지정문화유산”과 “국가등록문화유산”을 제외한 시·도지정문화유산 및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유산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